

ISBN제도, 민간 자율에 맡겨야

出協等,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意見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權炳壹)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李春熙)는 지난 2월26일에 문교부가 입법예고(공고 제188-3호)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문교부에 제출했다.

87년 11월28일 도서관법이 전면개정(법률 제397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전문 29조, 부칙 7조)은 ① 봉사인구가 2만명 미만인 최소규모 공공도서관의 건물면적을 종전의 165m²(50평)에서 330m²(100평)로, 기본장서를 1천권에서 3천권으로 늘리는 등 도서관 종류별 시설과 자료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을 비롯 ②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과 사서직원의 경력·학력 및 연수 과정의 상향조정 ③ 도서관 단위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④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료의 사전제출은 '출판자유 침해'

出協은 특히 동 개정안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권을 행사하고 출판사에서 한국문현번호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 해당자료의 표제지와 판권지 각 2매를 반포전 15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제20조 ②~⑤항)이 자칫 출판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3월 10일 이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출협은 '국제표준도서번호'란 원래 유럽의 출판사들과 서적상들이 주문처리와 재고파악을 위한 컴퓨터 사용을 전제로 창안한 민간레벨의 편의제도로서 법으로 규정하거나 국가기관이 간여할 성질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이 제도 창안의 배경, 외국의 운영방식 등에 무지한 소치이며 관료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관리하는 국제기구는 순수한 민간기구로서 본부를 독일 베를린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기구로부터 국가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비로소 이 제도의 활용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기관이 국제 ISBN 관리기구에 가입해서 민간기구(Agency)의 관리 내지 지시, 통제를 받

'국제표준도서번호'란 원래

유럽의 출판사들과 서적상들이

주문처리와 재고파악을

컴퓨터화하기 위해 창안한

민간레벨의 편의제도이다.

그럼에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관료사회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출판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판계는 입을 모은다.

겠다고 자청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출협의 주장이다.

또한 출판행정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염연히 문공부(출판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문교부의 하위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영역인 ISBN제도의 운영을 관장할 뿐 아니라, 이를 기화로 '자료번호부여 신청서'에 출판사의 연혁, 출판실적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 제출토록 의무화(제20조 ②항)하고 나아가 출판예정도서의 표제지·판권지를 발행 15일전에 제출토록 규정(동 ⑤항)하려는 것은 명백한 출판행정권의 침해이며 출판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출협은 주장했다.

그러한 의무규정은 출판·서적상계와 도서관에서의 실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편의제도에 지나지 않는 ISBN제도가 도리어 출판사 업무에 번거로움을 끼칠 뿐 아니라 출판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출판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출협은 출판계, 도서관계, 서적상계 및 학계가 공동참여하는 민간기구를 구성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본 '보상'도 정가의 전액으로

한편 출협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는 납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제작실비(정가의 2분의 1)를 보상하도록 한 규정(제19조 ③~④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즉, 납본도서에 대한 보상은 납본한 자의 청구 없이도 무조건 하도록 하되 보상기준은 정가금액의 전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 납본은 현재

'출판사 등록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데, 또다시 도서관법에 의해서도 납본을 의무화하는 것은 출판사에 2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민주화시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출협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도 이 개정령(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3월 12일 '도서관법시행령개정 연구위원회'(권기원 성대교수 외 11명)의 검토를 거친 끝에 17일 종합적인 의견서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圖協의 의견서는 개정안 작성에 도협측 전문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인지 대부분 부분적인 字句수정에 그친 느낌이다. 다만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위원(제7조 ②항)이 되는 관련단체장으로 도서관협회장·출협회장 외에

잡지협회장·음반협회장을 추가하고, 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중 '도서관은 이 슈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야 하도록 규정한 것을 '5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한 것이 눈에 띠는 정도이다.

ISBN제도에 관한 개정안의 규정에 대해서 圖協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출협이 삭제를 요구한 조항 중 '해당 자료(도서)의 표제지와 판권지 각 2매를 반포(발행일)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제20조 ⑤항)에 한해서만 '삭제'를 건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으로 ISBN제도의 시행 자체가 과연 출판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남긴다.

해설

ISBN이란 무엇인가

① 배경

1966년 11월 서독 베를린에서 열린 '도서시장연구 및 도서거래합리화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에서 ISBN제도의 필요성과 실행성이 처음으로 검토되어 1968년 영국의 제안을 토대로 국제표준조직기술위원회(ISO) 문서를 작성하고, 표준번호 제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ISO 전의안의 취지는 도서번호의 사용을 국제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각 출판사가 퍼낸 각각의 도서를 그 책에 고유한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붙여 분류하려는 것이다.

② ISBN의 구성

모든 ISBN은 열자리수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성내용에 따라 하이픈이나 공백에 의해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③ 그룹식별 번호

국가·지리·언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국제 ISBN 사무국에서 배당하는 것으로, 번호의 자리수는 그 그룹의 출판물의 양의 다소에 따라 달라진다. 경험에 의하면 국가별이나 지리적인 그룹 분류가 가장 이상적이다.

④ 출판사 식별번호

1단위에서 7단위까지의 자리수로 되어 있어 특정도서의 출판사를 나타낸다.

⑤ 도서식별번호

출판사 번호의 길이에 따라서 그 출판사에 배당된 번호들의 범위내에서 그 출판사가 간

행한 특정도서의 구체적 서명, 권, 판을 식별하려는 것이다. 도서식별번호는 보통 출판사 자체내에서 붙인다. 고유의 책번호를 붙임으로써 출판사에서는 책의 출판 준비단계 전반을 통해 그 번호로 책을 구분한다.

⑥ 확인번호

확인번호는 10부터 2까지를 가중치로 하여 11개수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은 컴퓨터에 의해 거의 즉각적으로 수행되어 번호를 잘못 썼는지의 여부를 탐지하는 구실을 한다.

⑦ ISBN의 대상

인쇄된 책과 소책자들 / 마이크로형 간행물 / 브레일식 점자 간행물 / 미디어 믹스 (Mixed Media) 간행물 / 읽을 수 있는 출력물을 내놓는 기계판독 가능한 테이프 / 교육영화의 슬라이드를 포함한 유사 미디어 (다만, 일기책, 달력, 광고물등의 일시적인 인쇄물 / 책 페이지와 본문이 없는 미술인쇄물이나 화첩소리녹음 / 정기간행물 등은 제외.)

⑧ ISBN제도의 활용범위

- 1) 출판사 및 서점
회계 / 출판사 및 서점내의 자료 분류 / 재고도서의 관리 / 주문방식의 효율성
- 2) 도서관
재고도서의 관리 / 주문방식의 효율성 / 자료의 카탈로그, 카드화 /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검색 / 도서관 간의 대출 및 대여